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352 |
|----------|------|

제출일자 : 2023. 9. 5.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노후·고장 등으로 사용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용이하게 하여 소유자의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는 한편, 이용자의 주차 안전 및 실질적인 주차장 확보를 통해 주차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2로 완화하여 적용하되(소수점 이하 버림)(안 제15조제2항)
- 나. 철거 후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완화 적용을 배제함 (안 제15조제3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1) 「주차장법」 제19조의13
 - (2)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3. 8. 10. ~ 8. 30.)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종합민원과, 건축과 협의 완료
-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규모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가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설치기준을 2분의 1로 완화(완화된 설치기준 대수의 소수점 이하는 버림)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설치기준이 적용된 건축물이라도 이후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완화된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주차장법 [시행 2022. 6. 9.]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老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 2018. 12. 18.>

[전문개정 2010. 3. 22.]

□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3. 4. 25.]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6. 7. 19.>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시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9.>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 7. 19.>